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김동아 · 조계원 · 김문수
임오경 · 박홍근 · 황명선
최혁진 · 안태준 · 이건태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

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귀화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귀화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제5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다.</u> <u>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u> <u>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